

##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회 위반  | 2회 위반 | 3회 이상 위반 |
| 가.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경우 | 법 제24조 제1항제1호 | 10만원   | 40만원  | 100만원    |
| 나.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4조 제1항제2호 | 5만원    | 10만원  | 20만원     |